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49 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 박정현·김남근·박홍배

문진석 • 이재정 • 김현정

이광희 • 이학영 • 조승래

신정훈 · 김동아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영국, 프랑스,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 담하고 있으며,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 하고 있음.

반면,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,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, 박근혜정부에서는 '최순실 등 민간인에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'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,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.

마찬가지로 이번 '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' 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검찰, 경찰 등 사법기 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.

이에 기존에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소관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정부조직법에서 삭제하고, 그 임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고자 함(안 제16조 삭제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047호), 「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048호),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045호)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제34조제5항 중 "치안"을 "대통령 등의 경호 및 치안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, 국가수사본부장 1명, 대통령경호 본부장 1명을 두되, 청장과 차장, 대통령경호본부장은 경찰공무원으 로 보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조(대통령경호처) ① 대통령	<u><</u> 삭 제>		
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			
대통령경호처를 둔다.			
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			
두되,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.			
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·직무			
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			
따로 법률로 정한다.			
제34조(행정안전부) ① ~ ④ (생	제34조(행정안전부) ① ~ ④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⑤ <u>치안</u>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	⑤ 대통령 등의 경호 및 치안-		
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			
속으로 경찰청을 둔다.			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⑦ <u>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</u>		
	1명, 국가수사본부장 1명, 대통		
	령경호본부장 1명을 두되, 청장		
	과 차장, 대통령경호본부장은		
	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.		
<u>⑦</u> ・ <u>⑧</u> (생 략)	<u>⑧</u> ・ <u>⑨</u> (현행 제7항 및 제8항		
	과 같음)		